

경운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2조(모집인원) 본 대학원의 모집인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3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및 전형료는 매전형시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4조(입학전형 위원) 입학전형의 서류심사,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등을 수행할 전형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입학전형 배점 및 합격기준) 입학시험의 배점 및 합격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6조(입학사정원칙) ① 지원자가 면접 및 구술고사 등에 결시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지원자의 합격판정은 학과별 배정인원을 고려하여 각 학과별 종합성적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합격자 중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정원칙에 의거 차점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입학지원자 수학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전형위원의 3분의 2찬성으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특별히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학사정에서 제외한다.
⑤ 입학전형별, 항목별 배점 및 동점자 우선순위결정,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합사정하는 경우의 사정원칙 등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은 매 전형 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입학사정원칙에 의한다.

제7조(합격자 결정) 입학전형의 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확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간에 대학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제9조(합격자 등록) ① 입학전형에서 합격이 결정된 자는 입학이 허가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입학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입학등록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약서(소정양식) 1부
2. 신입생 학적부 기재사항 신고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1매)
4. 사진 3매(3cm×4cm)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등록) ① 대학원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의 등록금은 학과별로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및 논문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등록을 해야하며 연구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비논문학위과정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졸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1.09.01.>

제11조(납입금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미 납부한 납입금 등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 포기의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장 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

제12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과 단위로 편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②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 전공교과목, 연구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 매학기 학과(전공)별로 공통교과목 3학점과 전공교과목 6학점 등 총 9학점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교과목 3학점을 추가개설할 수 있다. 한편, 연구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개설학점 제한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학위논문과정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공통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영역에서 통합 24학점 이상과 연구교과목 4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박사과정은 공통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영역에서 통합 36학점 이상과 연구교과목 4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⑤ 학과(전공)별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과정 승인절차에 따라 학과의 교육과정 변경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지정서식에 작성한후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공문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완성된다.

⑥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비논문학위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통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영역에서 30학점 이상과 연구교과목 2학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과정으로 수료자격을 기취득한자 중 비논문학위과정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수와는 별도로 공통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중에서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01.>

제13조(교과목 개설) ①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학기개시 4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개설교과목에 대한 개설승인원【별지서식 제1호】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개 교과목의 개설은 수강신청자가 2인 이상 되어야 개설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재직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예체능학과는 예외로 한다.

⑤ 교과목 담당은 교수 1인당 매학기 1개 교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교과운영상 외래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학기개시 2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연구학점) ① 연구교과목이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전공연구 및 논문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학점으로서 제3학기 및 제4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각 연구교과목에 대해서는 연구학점 2학점을 부여하며 전공종합시험은 연구과목3으로 인정하여 전공종합시험 통과시 연구학점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매 학기말 지도학생에 대한 연구논문 점수인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학기 연구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선수과목) ① 선수과목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는 선수과목이수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 제1학기 초에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부(대학)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4학기 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필”, “이수미필”로 평가토록 하고, 선수과목이수확인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이수 결과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과정수료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업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별도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업계획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고,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

강대상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업시간표 공고)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학과(전공)별 수업시간표를 작성하여 당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고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중 개설교과목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별지서식 제5호】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된 수강과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단, 시간표의 변경이나 폐강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수강과목 변경원【별지서식 제6호】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일한 교과목에 대한 중복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재수강신청) ① 재수강 신청은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가능하고 기 이수된 성적은 삭제한다.

② 재수강할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개설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체 교과목으로 변경·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재수강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때에는 수강신청서 비고란에 대체 교과목임을 기재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수강신청 한다.

제20조(재입학자, 편입학자 및 과정간의 학점인정) ①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기 이수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② 대학원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원 이수학점을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③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개설강좌에 한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는 통산하지 아니하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상기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학점인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타 학과, 타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① 대학원은 타 학과(타 전공 포함) 및 타 대학원간의 공동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학과(타 전공포함) 및 국내·외 타 대학원(군 관련 대학원을 포함) 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재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③ 별도의 협약에 의한 경우는 당해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22조(성적 정정 또는 취소) ① 성적의 정정 또는 취소는 지정된 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변경 마감 이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점 및 취득 성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성적정정신청원【별지서식 제7호】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정정 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①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평가종합기준에 따른 평가성적이 C이상인 경우에 학점을 인정한다.

②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학기 중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해서는 성적평가를 거쳐 학점취득을 인정 할 수 있다.

③ 복학생이 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며 복학학기 이후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성적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결과를 매학기 종료 후 지정된 기간내에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출석 10~20%, 과제10~20%, 정기평가 60~80%의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제25조(학과주임교수 임기) 학과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학년 초에 위촉한다. 중도에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할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과별로 별도의 변동이 없으면 유임으로 한다.

제26조(학과주임교수 임무) 학과 주임교수는 각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학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과목 설정 및 수업의 원활한 진행
2. 전공분야에 대한 학생의 연구지도 및 지도교수 추천
3. 시간표 작성 및 외래강사 추천
4. 논문심사위원 추천
5. 학생의 신상파악 및 지도
6.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하기 전의 기간에 학생의 수학지도

제2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대학원학칙 제32조에 의거 교원 1인을 위촉한다. 다만, 논문 지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2인을 공동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1인이 동일기수의 학생 5인 이상을 지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대학원 1학기 등록 후 지정된 기간내에 대학원장에게 지도교수승인신청서【별지서식 제8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또는 연구분야를 변경할 때에는 논문제출학기 개강일 이전에 【별지서식 제9호】에 의한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촉된 지도교수가 질병, 출국,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 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수여 요건

제29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위는 대학원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이며,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청구논문을 같음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술 및 연구보고서
2. 작품 및 저서
3. 학점취득증명서(비논문 석사학위청구자)

제2절 학위종합시험

제30조(자격시험) ① 학위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학위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된다.

③ 학위종합시험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외국어시험은 박사학위과정에만 해당되며 최종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이전에 통과해야한다.
2. 전공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석사과정은 18학점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은 27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단, 석사과정 중 비논문학위자의 경우는 24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어과목으로 실시하며(외국인은 한국어로 실시), 전공종합시험은 전공분야의 기초 및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09.01.>

⑤ 전공종합시험 과목의 수는 석사과정은 전공교과 2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공교과 3과

목 이상으로 한다. 단, 비논문 석사학위과정생의 경우에는 전공교과 3과목 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1조(응시절차) ① 학위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별지서식 제10호】에 의한 (학위자격) 외국어시험 응시원서 및 【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한 졸업(종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응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별 출제위원들은 전공종합시험계획서【별지서식 제12호】를 제출하여 전공종합시험을 치르고, 전공종합시험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13호】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

제32조(시험위원) 외국어시험 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전공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각 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직접하고 주임교수가 그 결과를 최종확인한다.

제33조(합격기준) ① 외국어 시험 및 전공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② 전공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제34조(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35조(논문작성 계획)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제14호】에 의한 학위논문작성계획서와 연구윤리서약서를 해당 학기 초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작성계획서는 1회에 한해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학위논문작성계획서와 연구윤리서약서를 해당 학기 중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논문의 작성)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는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제37조(논문 제출기간) 학위논문(기타 각종 대체 보고서 포함)은 관련 절차 및 학사업무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논문 제출 및 접수) ① 학위논문을 심사받으려는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득하고, 지정된 기간내에 【별지서식 제15호】서식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과 함께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 3부, 박사논문 5부)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출된 심사논문에 대해 1월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논문발표) ① 논문 제출자는 1회 이상의 구술(공개발표)심사를 하며, 논문발표 시기는 매 학기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발표를 학과교수 및 관계전공분야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③ 논문발표자는 발표요지(A4용지, 20매 내외)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심사위원추천) ① 논문발표자는 논문발표 신청시 논문심사위원 제청서【별지서식 제16호】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0조(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 및 자격) ① 학위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우리대학 교수 또는 학계에 권위가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3명, 박사학위는 5명으로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명 중 3명 이상을 본교 교원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우리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또는 비전임교원, 박사학위(예능계학과는 석사학위이상)를 소지한 타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1조(논문 심사기간)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논문심사) ①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석사과정은 예비심사 1회, 본 심사 1회 등 총 2회 이상 실시하고, 박사과정은 예비심사 2회, 본 심사 1회 등 총 3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과주임교수는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일정을 시행 1주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심사) ① 논문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석사는 3부, 박사는 5부)을 논문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진행중에 발표 요약서, 관련문헌,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논문발표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논문발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순과 11월 중순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44조(본심사) ① 논문발표자는 본심사 1주일 전에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논문(석사는 3부, 박사는 5부)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의견서를 통합하여 본심사를 평가하고 【별지서식 제17호】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심사 시기는 매년 6월 중순과 12월 중순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 내에 정한다.

④ 제출된 논문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과정에서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논문의 평가 및 통과) ①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심사위원별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제46조(비논문 석사학위청구자) ① 비논문학위과정으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3학기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관련 절차에 따라 비논문학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 그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4학기 최종등록일 이전에 석사학위 청구심사 변경 승인원【별지서식 제18호】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01.>

② 소속 대학원에 4학기 이상 정규등록후 해당교과 이수학점을 21학점이상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지도교수가 선정한 최소 3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전공종합시험(연구과목3 - 2학점)을 치러야 한다. 본 항의 내용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이전 입학생들은 27학점이상의 학점취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학위논문과정 유형의 수료자가 비논문학위과정 유형으로 변경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학기 등록기간중에 석사학위 청구심사 변경 승인원【별지서식 제18호】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제4절 학위수여

제47조(학위수여자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완성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8조(심사비)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학위수여) 총장은 각 과정별 학위 수여자로 결정된 자에게 학위기로서 해당학과(전공) 학위를 수여하며 후드의 색상은 <별표1>과 같다.

제50조(논문의 제출) 학위수여가 결정된 자는 석사학위논문은 7부, 박사학위논문은 10부를 논문 수록 파일(학위논문파일, 저자목록파일 : 한글 작성), 저작권위임동의서와 함께 대학원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0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1.09.01.>

대 학 원	석·박사학위명	색 상
일반대학원	행 정 학	자주색(Purple)
	경 호 학	보라색(Violet)
	안 전 학	보라색(Violet)
	공 학	주황색(Orange)
	간 호 학	노랑색(Yellow)
	이 학	노랑색(Yellow)
	치위생학	엷은 보라색(pale Violet)
	체 육 학	녹색(Green)
	경 영 학	벽돌색(Cooper Color)
산업정보대학원	공 학	주황색(Orange)
	경 영 학	벽돌색(Cooper Color)
	관광경영학	벽돌색(Cooper Color)
	미 술 학	브라운색(Brown)
	이 학	노랑색(Yellow)
사회복지대학원	문 학	흰색(White)

[별표2] <신설 2019.11.08.>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내 국 인	T O E I C	600
	T O E F L	500 (PBT)
		173 (CBT)
		61 (IBT)
	T E P S	473
		252 *2018.05. 개정 이후
외 국 인	T O P I K	4급 이상
※ 대학원 입학 이후의 자료만 인정하며 제출 시점 2년 이내 성적만 인정함.		